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6. 14. 제천시장
- 회부일 : 2010. 6. 15.
- 상정일 : 2010. 6. 21.(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가. 제안이유

조례 제정 이후 20여년간 국민주택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이 상실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광신)

- 본 조례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고 본 조례 및 주택법에 의한 신규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5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주택법의 종전 법률인 주택건설촉진법의 위임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5년 제정된 조례로서
-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1990년(비둘기아파트)이후 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2009년도 일반회계로 95억원이 전출함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2009년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폐지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 본 특별회계에 대하여 최근 5년동안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92억48만원, 2007년에는 96억68만원, 2008년에는 103억 28만원, 2009년에는 11억49만원, 2010년 6월 현재 15억29만원으로 2010년 제1회 추경시 일반회계로 15억을 전출할 계획이며.
- 국민주택융자금 미수납액은 18건에 69,308,880원으로 현재 상환기간 만료일이 모두 도래된 상황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수납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타시군의 경우에 있어서도 본 특별회계의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조례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으며 도내 시군 중 4개 시군이 이미 폐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본 조례안의 목적인 농촌주택사업, 국민주택사업, 영구임대주택 주거 환경개선사업 등의 주택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과 융자금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방안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설명과 함께 자세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치 않는지?(김병창 위원)
- 농촌주택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김병룡 위원)
- 국민주택융자금 미수납액 처리후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권건중 위원)
- 예산안과 동시에 조례안을 상정함으로써 조례 부결시 예산안 전체가 많이 혼들리게 됨으로, 본 조례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김명섭 위원장)

나. 답변요지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 국민주택사업은 서민에 대한 주택보급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으나, 지금은 주택에 관한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고 앞으로 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
- 농촌주택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주택 보수등 별도의 지원 사업이 있음.
- 융자금 미회수 대상자는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어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례 폐지후 미회수액에 대한 징구방안을 강구 하겠음.
- 우리지역은 주택보급율이 타 도시에 비하여 높은 편이고, 소규모 공동 주택에 대한 추진실적이 없어 폐지안을 입안하게 되었음.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 선행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5. 소수의견

“없음”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부. 끝.